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583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703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㎢)	비 고
합 계			0.72	
서울	용산구	이촌동, 한강로1가 한강로2가, 한강로3가 용산동3가, 원효로4가	0.72	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지정 (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및 그 인근지역)

-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㎡ 초과
	임 야	1,0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㎡ 초과

3.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확인*

* 뉴스·소식-공지사항-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※ 기존 공고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가 이전과 동일하게 재지정되어 토지조서 생략

4.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

붙임 **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**

【 용산정비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: 재지정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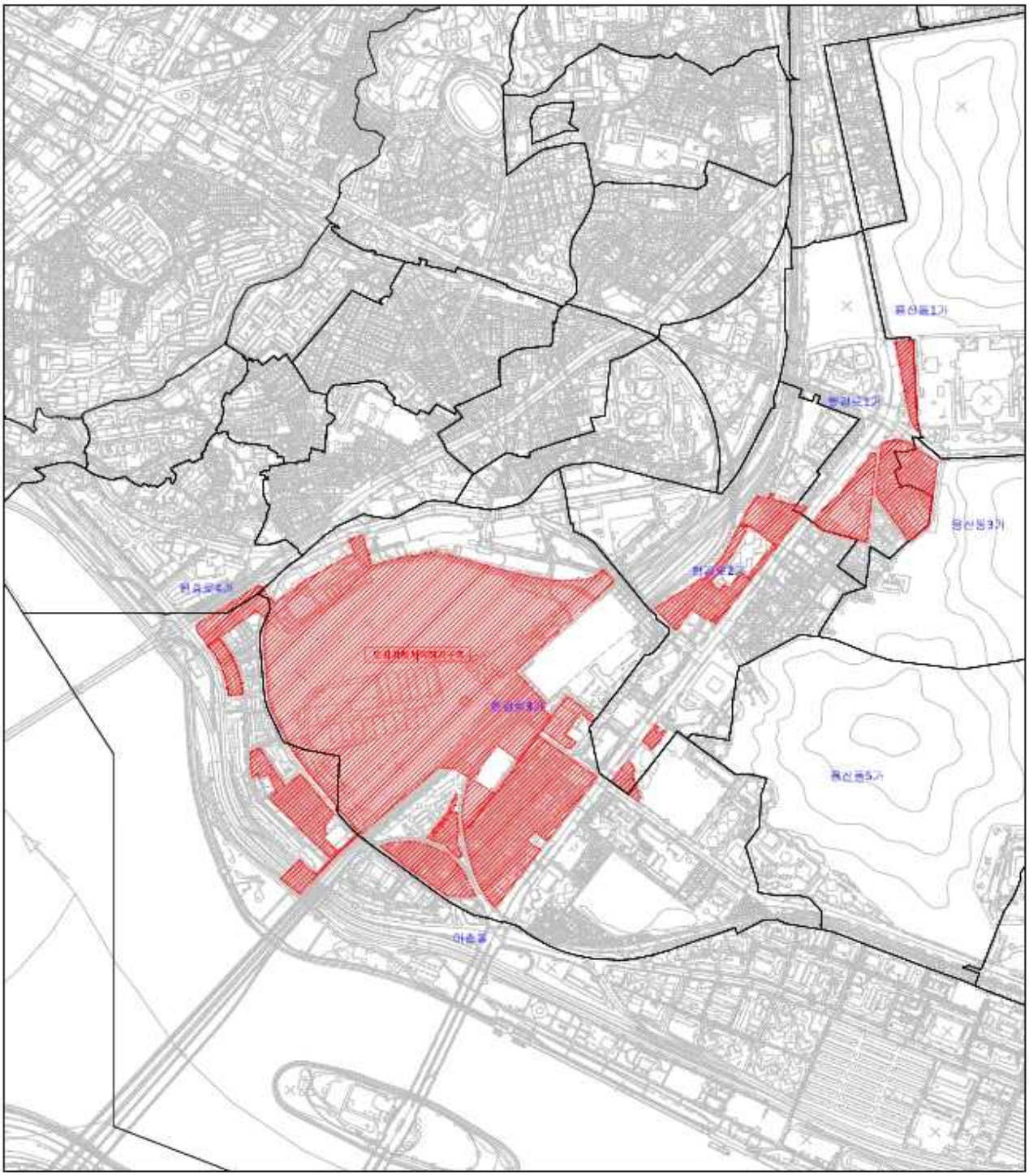

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
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

범 례
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

동 경 계